

영등포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2020. 5. 1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7호로 2020년 4월 1일 정선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안 제1조)
-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2조)
- 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안 제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지방공무원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2020.2.19.~2.23.)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련 법령 검토 내용을 보면

지난 2019년 8월 6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는 한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한 징계 요구 면책 및 징계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특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검토 결과

그동안 공직사회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부족하여 소극적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되었으나,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되는바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과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 of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